KOSHA GUIDE

B - M - 2 - 2025

# 혼합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

2025. 3.

#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기술지원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·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규정임

## 기술지원규정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재수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

- o 제·개정경과
  - 2000년 6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0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9년 4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9년 5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  - 2024년 11월 기계·전기안전분야 전문위원회 심의(개정)
  - 2025년 1월 표준제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 - 영국 MTTA 코드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제2절 제619조(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 그램 수립·시행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(자율안전확인의 신고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(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)
- 고용노동부 고시「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」제4장 혼합기
- 고용노동부 고시「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」[별표2] 자율안 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
- ㅇ 기술지원규정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원규정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의 기술지원규정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규정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5년 3월 26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<u>목 차</u>

1. 목 적1
2. 적용범위1
3. 용어의 정의1
4. 혼합기 관련 법적 필수사항2
4.1 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······2
4.2 그 밖의 관련 법령2
5. 혼합기의 방호조치3
5.1 덮개의 설치
5.2 덮개의 연동장치 설치3
5.3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4
5.4 키 전환스위치의 설치4
5.5 잠금장치의 설치4
5.6 비상정지장치의 설치5
5.7 구동장치의 방호5
5.8 작업위치 방호5
6. 혼합기의 작업안전5
6.1 준비작업6
6.2 본작업6
6.3 마무리 작업7
7. 명판 및 취급설명서7
7.1 명판의 부착7
7.2 취급설명서의 제공8
<부록> 혼합기 자율안전점검표9

# 혼합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

# 1. 목 적

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 제8항 및 제3편 제10장 제2절 제619조(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수립·시행 등)의 규정을 반영하여 혼합기의 재해를 예방하기위한 방호장치 선정·설치·사용 등의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규정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혼합기에서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키 전환스위치" 라 함은 키를 삽입한 상태에서만 혼합기의 회천축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전환 스위치를 말한다.
  - (나) "연동장치(Interlock System)"라 함은 기계의 각 작동부분 상호간을 전기적, 기계적 또는 유공압을 연결하여 기계의 각 작동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기구를 말한다.
  - (다) "감응형 방호장치(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)" 라 함은 어떠한 대상이 있음을 감지하거나, 방호차단을 위하여 감지소자, 제어·감시장치, 출력신호 개폐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.
  - (라) "잠금장치"라 함은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에어실린더 또는 전자코일 등을 이용하여 덮개를 잡고 있다가 제어회로 전원을 차단시키면 덮개 잠금상태를 해지 시키는 기계적 연동장치를 말한다.

B - M - 2 - 2025

(2)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혼합기 관련 법적 필수사항

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으로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4.1 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

안전보건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에 따라 사업주는 혼합기 사용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

- ⑧ 사업주는 분쇄기·파쇄기·마쇄기·미분기·혼합기 및 혼화기 등(이하 "분쇄기등"이라 한다)을 가동하 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.
  - 1.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
  - 2.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
  - 3.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 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
-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(危害)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,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.
  - 1.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
  - 2.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
  - 3.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 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

#### 4.2 그 밖의 관련 법령

혼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포함되므로,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의 및 적용범위에 해당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####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(자율안전확인의 신고)

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·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(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
####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(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)

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다. 혼합기

#### 고용노동부 고시「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」제4장 혼합기

제8조(정의) 1. "혼합기"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,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혼합용기, 나. 혼합용기 회전장치, 다. 회전날

제9조(제작 및 안전기준) 혼합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.

# 고용노동부 고시 「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」[별표2]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 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

3. 혼합기

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

- 가.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
- 나.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
- 다.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
- 라. 식품용

## 5. 혼합기의 방호조치

#### 5.1 덮개의 설치

수동식 덮개의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고 카운터웨이트, 스프링 등을 이용하여 덮개가 급격하게 닫히지 않아야 한다.

#### 5.2 덮개의 연동장치 설치

- (1) 위치검출센서를 장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회로를 작동시켜 회전날의 회전운동을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는 상시 개로식(Nomal open)으로,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(Nomal close)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센서 중 한 개가 고장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식 및 경고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동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(3) 덮개가 닫히더라도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만 회전날의 회전운동이 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안전제어시스템에 대한 설계·선정·검증·정비에 관한 세부내용은 KOSHA GUIDE 「기계안전을 위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품류 설계 기술지침」을 참조한다.

# 5.3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

- (1) 혼합기 운전 중에 감응형 방호장치가 작동되면 감응형 방호장치가 정상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고 제어장치를 수동으로 재작동시키기 전까지는 혼합기를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감응형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기술지원규정(E-8)「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」을 참조한다.

## 5.4 키 전환스위치의 설치

- (1) 조작반이 혼합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, 작업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만 가동이 가능하도록 혼합기에 가장 인접한 위치에 키 전환스위치를 설치한다.
- (2) 혼합기와 조작반이 붙어 있거나, 조작반에서 혼합기 내부감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소, 정비, 보수를 위해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조작반에 키 전화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키 전환스위치에 키가 삽입된 상태에서만 기동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.

#### 5.5 작금장치의 설치

- (1) 덮개잠금장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회전 날이 회전 중에는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덮개 잠금 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.
- (3)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제어전원 차단 시에 관성에 의한 회전 날의 운동이 완전히 정지된 후에야 잠금장치가 풀릴 수 있도록 시간지연장치를 설치하며, 설정 지연 시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한다.

## 5.6 비상정지장치의 설치

- (1) 설비에 비상정지회로를 구성하여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시에 안전하게 정지상태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회로의 구성은 페일세이프(Fail safe) 회로이어야 하며,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회로는 수동으로 복구되어야 하며 스위치를 복귀하더라도 전원은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고, 운전조작을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버튼은 버섯형(돌출) 형태로 적색으로 하며 크기는 지름이 3 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(5) 비상정지장치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, 작업자가 서거나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등 작업조건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.

#### 5.7 구동장치의 방호

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기의 벨트, 체인, 기어 등은 완전히 둘러싸인 고정형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5.8 작업위치 방호

- (1) 작업의 성질상 덮개의 설치가 곤란한 혼합기에는 가동부분에 접촉 또는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료투입 개구부 주위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원료투입 및 점검용 작업발판이 설치된 혼합기에는 근로자가 통로 측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 6. 혼합기의 작업안전

혼합기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작업유형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확인·제거하고, 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확인하여야 한다. 단계별 확인사항은 다음 내용 및 <부록> 혼합기 자율안전점검표 등을 참고할 수 있다.

# KOSHA GUIDE B - M - 2 - 2025

#### 6.1 준비작업

- (1) 책임자는 작업계획서와 작업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폭발성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·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화기 등 점화원이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가열, 마찰 또는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.
- (3) 작업자는 작업개시 전에 설비의 일상점검 및 급유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자는 혼합 지시서에 의하여 각 재료 계량기의 계량기준치를 조정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개시 전에 작업자는 정 위치에서 설비의 시험가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전원을 투입하고 혼합기의 덮개 연동장치, 감응형 방호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.

#### 6.2 본작업

- (1) 원자재를 선별 운반하여 호퍼로 이동시켜야 한다.
- (2) 혼합 지시서에 의하여 원재료를 계량하여야 한다.
- (3) 혼합기 가동스위치를 가동시키고 원재료를 순서에 의해 투입하여야 한다.
- (4) 투입 후 규정된 혼합시간 동안 혼합하여야 한다.
- (5) 혼합작업이 완료되면 혼합물을 다음 공정으로 이송시켜야 한다.
- (6) 혼합작업 중에 구동장치 및 혼합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7) 혼합작업 중에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덮개를 열기 전에 혼합기 가동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등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#### 6.3 마무리작업

- (1) 작업자는 생산작업 완료시 혼합기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2) 혼합기 내부 작업시에는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 KOSHA GUIDE 「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」 및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0장 제2절 제619조(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·시행 등)을 참조한다.)
- (3) 혼합기 내부에 들어갈 때는 출입허가를 얻은 후에 출입하여야 한다.
- (4) 혼합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키 전환 스위치의 키를 뽑아 소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 하며 청소 중 적색표지판을 해당 스위치에 걸어놓아야 한다.
- (5) 책임자는 설비점검 기준표에 의하여 주유·점검하고 작업장 주변을 청소·정리하여야 한다.

# 7. 명판 및 취급설명서

#### 7.1 명판의 부착

모든 혼합기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(1) 제조자명 및 주소
- (2) 모델명 또는 형식명
- (3) 제조연월일
- (4) 기기 일련번호
- (5) 혼합용량
- (6) 회전수
- (7) 전동기 용량

# KOSHA GUIDE

B - M - 2 - 2025

- (8) 기기의 중량
- (9) KCs 마크 자율안전확인표시(해당 시)

# 7.2 취급설명서의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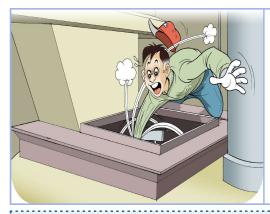
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취급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.

- (1) 주요 작동방법
- (2)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
- (3) 방호장치의 기능점검
- (4) 방호장치의 유지보수
- (5) 안전작업방법
- (6) 내부청소,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

B - M - 2 - 2025

〈부록〉

# 혼합기 자율안전점검표



## →혼합기(Mixer)란?

액체, 고체 및 고점도 물질 등 각종 물질을 혼합하여 혼합물의 균질성을 도모하는 기계

#### ·주요 사망사고 사례

- ① 혼합기에서 재료 배합 중 끼임
- ② 혼합기 내부 이물질 제거작업 중 가동된 믹서기에 끼임
- ③ 혼합기에서 재료 배합 중 스파크로 인한 화재 발생

모든 작업유형 별로 <sup>©</sup>「위험성평가」를 실시하여 <sup>©</sup>위험요인을 확인·제거하고, <sup>©</sup>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!

# 핵심 안전조치

- 덮개 연동장치 설치 및 작동확인
- ② 청소·수리 작업 시 기계 전원 차단
- ❸ 운전정지 시 "조작금지" 표지 게시

구 분	자율점검 항목	점검 결과	조치 사항
관리적 사항	① 자율안전확인 신고 기계 사용 [적용제와 ① 오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 회전형, ② 기류교변형 ③ 용량 200리터 미만 또는 구동모터 용량 1.0kW 이 하 ② 식품용]		
	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(위험이 예상되는 곳 표자판 설치,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국어로 표시)		
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	③ 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조치 [원료 투입구 덮개, 동력전달부, 속도조절부 등]		
	④ 방호장치 임의 해체금지(연동장치 등)		
	⑤ 기계의 동력차단장치(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및 정상작동) 설치		
	⑥ 전기 기계·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[제어반 전기기계·기구는 물기(습기)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처리]		
	⑦ 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[혼합기 외함접지 상태 및 누전여부 확인]		
정비·청소· 검사·수리· 교체 작업 시	®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[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동력전원 차단, 잠금장치 및 "점검 중 조작금지" 표지 게시]		
	⑨ 오조작 방지를 위한 조작반 및 분전함에 설비명, 차단기명 기입		
	⑩ 비상시 연락조치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		
근로자 준수사항	①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[원료투입청소 등의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 금지]		
	② 혼합기 설비 조작방법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		
	③ 작업모 등의 착용 [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 착용]		

# 기술지원규정 개정 이력

- □ 개정일 : 2025. 2. 3.
  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
  - 개정사유 :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
  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8항 및 제9항 개정 내용 반영
  - 주요 개정내용
    - "4. 혼합기 관련 법적 필수사항" 항목 추가
    - "5.3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" 항목 추가
    - "6.2 본작업" 항목에서 덮개 개방 시 혼합기 가동 정지에 대한 내용 추가
    - "<부록> 혼합기 자율안전점검표" 추가
- □ 재공표 : 2025. 3. 26.
  - 기술지원규정 영문 명칭(KSH-GUIDANCE→KOSHA GUIDE)으로 재공표